

문서번호	대학평의원회-2
보고일시	2019. 12. 26
공개여부	공개

결	주무관	부의장	의장
재	김미영	김용우	[Signature]

2019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I

회의 개요

1. 일시 : 2019.12.18.(수), 16:00 - 17:30
2. 장소 : 진수당3층 361호 대회의실
3. 참석 위원 : 17명(대학평의원회 의원)
 - 불임참조
4. 배석자 : 4명
 - 손정민 교무학사부처장, 김도환 대학원부원장, 나지은(교무과), 김미영(대학평의원회).
5. 회의 안건
 - 가.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(안) 심의
 - 나.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학칙(안) 심의

II

회의 결과

1.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(안) : 문구수정 후 원안가결
 제58조제2항 중 “과하며”를 “이수하도록 하며” 로 “과함을” 을 “이수함을” 로 문구수정 하여 가결
2.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 : 원안가결
 - 2020학년도 대학원 학과 신설
 - 캠퍼스 간 정원조정

III

회의 내용

❖ 전북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학칙의 제·개정(안)에 관한 사항으로 전북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(안)을 심의함

1. 개회선언 및 인사

○ 의장 : 전체 위원(22명) 중 참석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 각 위원들 소개 및 인사, 안건 심의 진행

2. 안건 심의

가. 안건 1 :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

○ 학부 내 전공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(안 제5조제4항) (가결, 찬성17)

○ 연계전공 설·폐 및 명칭변경에 따른 학과 명시(안 제6조제1항 [별표 1]) (가결, 찬성17)

- 연계전공 신규설치 : 농업생명과학대학 작물생명과학과(미래농생명산업) 상과대학 회계학과(연금관리학)
- 연계전공 명칭변경 : 상과대학 경제학부(금융·정보경제학→금융·연금경제학)
- 연계전공 폐지 :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(방사선생물학)

대 학	모집단위명	입학정원	개 설 전 공
농업생명과학대학	작물생명과학과	31	작물생명과학, 미래농생명산업(신설)
상과대학	경제학부	66	경제학, 금융·연금경제학(변경)
	회계학과	55	회계학, 연금관리학(신설)
자연과학대학	생명과학부	63	분자생물학(33), 생명과학(30), 방사선생물학(폐지)

○ 학생처 ‘취업지원부’를 ‘취업지원과’로 변경하고 산학연구본부 ‘산학협력과’를 ‘산학협력부’로 변경 운영(안 제10조, 제14조의2) (가결, 찬성17)

- 국립학교 설치령 상 기존 법정조직 수 유지
- 법정조직은 ‘과’, 비법정 조직은 ‘부/실’로 통일

○ 대학 부속시설 폐지 및 소관부서 변경(안 제14조제1항 [별표4]) (가결, 찬성17)

- ‘혁신교육개발원’의 중복 표기 수정

- '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'의 지정취소 및 운영중단에 따른 조직 폐지
- '전통공연예술단' 미운영에 따른 조직 폐지
- '원격평생교육원' 및 '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' 업무연관성 고려 소관부서 변경

○ 공과대학 건축·도시공학부 건축학전공의 수업연한 5년제를 삭제함(안 제38조)
(가결, 찬성17)

- 수업연한이 5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한 사유 및 과정 질의
: 건축도시공학부가 건축공학과, 도시공학과, 건축학과로 분리되었으며, 건축공학과 및 건축학과의 통합되면서 5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되었음
- 폐지된 학과로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학위기 등 질의
: 재입학의 경우 본인 입학학년도의 학칙으로 졸업학점 등을 이수해야하며, 다만 폐지된 학과의 경우 학칙의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음

○ 약학대학의 수업 연한은 6년(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·소양교육 2년과 편입학 후 전공교육 4년)으로 함(안 제38조)(가결, 찬성17)

- 6년이라고 하는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음 : 현재는 2+4년 편입학체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팔호안에 설명을 하고 있음, 2022년도에 학제전환 될 경우 학칙 개정 예정임

○ 약사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허용(안 제42조)
(가결, 찬성17)

○ 약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(안 제49조)(가결, 찬성14)

○ 휴·복학 신청 시 보호자 연서 부분을 삭제함(안 제53조 제1항 및 제3항)(가결, 찬성16)

- 휴학서류 처리과정 및 온라인 상 처리 가능 유무 질의
: 학생이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과장 및 학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계획임

○ 약학대학 약학과의 교과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며,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(안 제58조)(가결, 찬성16)

- '과하며'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음, 혼동이 있으므로 수정하면 좋겠음
: '과하며'를 '이수하도록 하며'로 '과함'을 '이수함'으로 수정하여 가결

- 주전공 및 다전공 이수 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59조)(가결, 찬성17)
 - 최소전공 및 심화전공을 주전공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질의
 - : 최소전공은 학부(과)에서 듣는 전공으로 표현되어 있으며, 고등교육법 제19조에 의하면 주전공이라는 용어 대신 전공선택제의 용어를 도입하고 있음, 주전공 보다는 최소전공, 심화전공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으며, 혼란이 없을듯함, 원안으로 가결
- 약학대학 약학과로 복수전공, 부전공을 택할 수 없으며, 소속 학생도 복수전공,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(안 제60조)(가결, 찬성17)
- 약학대학 학생은 성적경고를 제외하고, 학기당 취득학점은 22학점까지로 정함(안 제72조, 제76조)(가결, 찬성17)
- 각 학년 수료인정 학점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, 약학대학 학생의 유급내용을 정함(안 제77조 제3항, 8항)(가결, 찬성17)
- 연계전공 신설학과, 약학과의 학위종별 추가 및 변경 폐지된 학과의 학위종별 현행화(안 제83조제1항 [별표 3]) (가결, 찬성17)

학위종별	졸업대학	학부(학과)
약학사	약학대학	약학과
미래농생명산업학사	농업생명과학대학	미래농생명산업
연기금관리학사	상과대학	연금관리학

- 영문 졸업증서 표기 변경 (안 제83조제1항 [별지서식 2-2]) (가결, 찬성17)
 - “Chonbuk National University”를 “Jeonbuk National University”로 변경
 - “Diploma No. CBNUy(B)학위번호”를 “Diploma No.JBNUy(B)학위번호”로 변경

나. 안건 2 :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(안) : 원안 가결(가결, 찬성17)

- 2020학년도 대학원 학과 신설(안 제3조제1항 [별표 1] 및 캠퍼스간 정원조정
 - 캠퍼스간 정원조정을 해야하는 지, 총정원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지 질의
 - : 교지간 거리가 20킬로 이상일 경우 단일교지로 보지 않으며, 교지(캠퍼스)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별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음

◎ 폐회 17:30분

붙임 대학평의원회 참석자 명단 1부. 끝.